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4호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이용시설과 지원하는 소방시설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junani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용시설”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